기업과 인권을 연결하기

Bridg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초 보고서 시리즈

Foundational papers series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소개 글

An introductory note for care and support service providers

장애인을 위한 권리 기반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향하여

Towards rights-based care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KOICA Koddi

이 글에 관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장애인은 사회에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존엄성과 자율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와 체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수의 법적, 정부적, 재정적, 구조적, 문화적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장벽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기준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

장애포괄적 인적지원 제공의 평등과 품질(EQUIP) 프로젝트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사항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자신의 업무에 관한 법적·규범적 배경, 그리고 장애인 권리 실현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
- 실무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해 왔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종 상호 연계되고 상호 강화하는 구조적, 체계적, 정책적, 문화적 사안;
- 위치와 맥락에 관계없이, 인권 관련 위험의 다양한 원인을 더 잘 식별하고 분석하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EQUIP 프로젝트는 특히 사람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은 그 구조와 관계없이 장애인에게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를 포괄한다. 이는 영리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또는 자선단체, 국영 기관, 국제기구, 국경 간 네트워크, 또는 이들의 조합에 해당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 기초 보고서들은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부문 차원에서 활용하여, 인권 존중을 핵심에 둔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 모음을 제공한다(상자 1 참조).

상자 1:

EQUIP 프로젝트 기초 보고서 시리즈

이 기초 보고서 시리즈에는 소개 글과 다섯 편의 기초 보고서가 포함되며, 함께 읽을 때 더 큰 도움이 된다:

기초 보고서 시리즈 소개: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소개 글

기초 보고서 제1호: 규제자이자 구매자로서의 국가

기초 보고서 제2호: 이용자 주체성과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민주화

기초 보고서 제3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인권 위험

기초 보고서 제4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부문의 인권 실사와 구제

기초 보고서 제5호: 돌봄 및 지원 분야를 위한 "스마트 믹스" 조치

EQUIP 프로젝트는 또한 변화를 위한 로비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이나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의 질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이들,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및 대표 조직, 그리고 돌봄 및 지원 경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는 기타 이해관계자(노동조합 및 옹호 단체 등)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EQUIP 프로젝트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이니셔티브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본 번역본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원문(영문)과 번역문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웹사이트에 게재된 영문 원문이 우선합니다.

원문 경로: OHCHR 홈페이지 > Documents > Tools and Resources > Equality and Quality in Disability-Inclusive Human Support Provision (EQUIP): Foundational Papers and Checklist

핵심 요지

하나: 인권을 지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돌봄 및 지원에 대한 권리 기반 이해가 필수적이다.

둘: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설계와 제공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핵심적이다.

셋: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 돌봄 및 지원 부문에 대한 전 세계적 규범 체계를 정립한다.

넷: 국가의 인권 의무는 국가가 돌봄 및 지원 부문을 규제하고 관여하는 방식을 형성해야 한다.

다섯: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여섯: 유엔 이행원칙은 영리 기업 행위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비영리 행위자에도 적용된다.

일곱: 인권 존중은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덕적 책무이자 비즈니스적 책무이다.

하나: 인권을 지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돌봄 및 지원에 대한 권리 기반 이해가 필수적이다.

OHCHR은 "돌봄 및 지원"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 및 타인이 일상 활동을 수행하고, 안녕을 유지하며, 존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행위로 정의한다.[1]

사회적 가치와 성별 역할에 대한 가정은 장애인과 관련하여 "돌봄"과 "지원"이라는 용어에 대한 몰이해된 이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은 정책과 조직 관행에 영향을 미쳐, 돌봄 및 지원 체계 내에서 지위와 권력의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예를 들어, "돌봄"을 의존과 보호라는 전통적 역할의 일환으로서 가족 내에서,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양육 과업의 집합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온정주의, 성 불평등, 그리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모델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동시에 돌봄의 더 넓은 사회적 조직화는 흔히 심각한 권력 불균형을 반영하며, 소외된 여성과 소녀의 노동을 착취하고, 이 부문의 노동자와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 모두에게 구조적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마찬가지로 "지원"은 때때로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의 한 요소가 아니라, 선의로 제공되는 비공식적 도움이나 원조로 오해되기도 한다.[2] 역사적으로 장애 옹호자들은 또한 돌봄의 사회적 조직화가 장애인의 선택, 자율성, 주체성을 부정하는 온정주의적이고 하향식인 모델을 조장한다고 비판해 왔다.[3]

이와 달리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자율성과 포용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지원"을 강조한다.[4] 아울러 성평등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5.4는 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보호정책의 제공을 통해, 그리고 국가별로 적절한 방식으로 가구 및 가족 내 책임 분담을 증진함으로써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것을 촉구한다.[5]

"돌봄 및 지원"이라는 결합된 용어는 유엔 결의와 보고서에서 점점 더 널리 수용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상자 2, 3, 4 참조).[6]

상자 2:

"지원"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OHCHR 문서 A/HRC/55/34에 따르면 "지원"은 다음을 포괄한다:

- **비공식적 지원:** 장애인의 가족 및 개인적 관계망에서 주로 제공되는 무급 돌봄 및 지원 노동과 같은 것;
- **공식적 지원**: 지원 노동자(예: 전문 개인활동지원사, 수어 통역사, 가사 노동자)에 의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 그리고 제품(예: 보조기기 및 신기술)을 통해 이용 가능해지는 지원.

지원 체계는 이를 넘어서 주거, 교통, 탈시설화 전략, 인프라, 그리고 법적 능력에 관한 것과 같은 법 개혁과 이들을 통합한다.

상자 3: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관한 ILO의 노력

국제노동기구(ILO)는 돌봄 경제에 관한 작업을 주도해 왔다. 2024년 6월, 국제노동회의는 "돌봄 노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ILC.112/결의안 V를 채택했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활동 및 관계; 인간의 역량을 함양하고; 주체성, 자율성, 존엄성을 증진하며;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이들의 기회와 회복력을 발전시키고; 생애 단계에 따라 다양한 개인의 필요를 다루며;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장애인 및 모든 돌봄제공자를 포함한 사람들의 돌봄 및 지원에 관한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정신건강적, 발달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7]

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ILO는 미래 노동에 있어 돌봄 및 지원의 중심성을 재확인하였으며, 국가, 사용자, 노동자가 권리 기반적이고 성인지적이며 포용적인 돌봄 및 지원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참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상자 4:

돌봄 및 지원 부문: 유형 분류

돌봄 및 지원 제공자는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 **국가 제공자**: 정부 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 기관 또는 서비스(보건, 사회보호, 교육 등);
- **민간 영리 제공자**: 대형 서비스 기업 및 소규모 계약업체를 포함하여 상업적 기반으로 운영되는 단체;
- **비영리 또는 시민사회 조직**: NGO, 재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지역사회 기반 이니셔티브로, 장애인 스스로가 개발하고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를 포함할 수 있음; 그리고
- 비**공식 및 무급 관계망**: 공식적인 고용이나 계약 체계 밖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 이웃, 또는 동료.

실제로는 이러한 행위자 및 활동 유형 간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는 혼합적이거나 협력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 분류는 논의와 분석, 특히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책무성 체계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8

참고: EQUIP 프로젝트는 국가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및 비영리를 포함한 사람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공식적 제공자에 초점을 맞춘다. 무급 돌봄 및 비공식 지원은 돌봄 및 지원 체계라는 더 넓은 생태계의 일부로 인정되지만, 이 프로젝트의 주요 초점은 아니며, 프로젝트는 대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검토한다.

둘: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설계와 제공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핵심적이다.

인권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성격상 '보편적'인 인권은 국적, 성별,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 피부색, 종교, 언어,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지위와도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원래 국제법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이후에 무엇을 말하거나 행하든 관계없이 존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계속 발전한다.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1966년에 채택된 두 개의 조약,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불리는 것을 구성한다. 그 밖의 인권 기준들도 다른 국제 조약 및 문서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의 영역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특히 중요하다(아래 핵심 요지 셋 참조).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이 부문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ILO 협약**과 같이 관련될 수 있는 다른 국제 인권 기준들도 있다.

> "돌봄 및 지원을 제공하는 이들과 필요로 하는 이들의 권리는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돌봄 및 지원 체계는 돌봄 및 지원을 제공하는 이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 양측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 보호, 이행해야 한다."[9]

돌봄 및 지원 서비스가 설계되고 제공되는 방식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살 것인지 선택할 권리, 타인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건강 및 폭력·착취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그 밖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다.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설계와 제공은 또한 이 부문 노동자의 권리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공정하고 유리한 고용 조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차별과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10]

셋: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 돌봄 및 지원 부문에 대한 전 세계적 규범 체계를 정립한다.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191개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이로써 현재 발효 중인 국제 인권 조약 중 두 번째로 많이 비준된 조약이 되었다.

이 협약은 확립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원칙과 규범에 기반하여, 포괄적인 돌봄 및 지원 체계를 설계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틀을 제공한다.

CRPD 하에서 장애인의 돌봄 및 지원은 자선이나 의료적 지원으로 취급되지 않고, **권리의 실효적 실현을 위한 구조적 조건**으로 다루어진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이 거주지와 생활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고 통제하는** 개인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제19조);**
-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 그리고 필요시 법적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 지원을 받을 권리**. 이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상속받을 동등한 권리, 자신의 재정을 통제할 권리, 은행 대출·담보대출 및 그 밖의 금융 신용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그리고 … 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다(제12조);
-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는 장애의 존재가 결코 자유 박탈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제14조);
-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및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제28조);
- **장애인 및 그 대표 조직에 의한 의사결정, 이행, 모니터링에의 참여**(제4조 제3항, 제29조, 제33조 제3항); 그리고
- 지원을 위한 가능 조건인 **접근성 및 개인 이동성**(제9조 및 제20조).

넷: 국가의 인권 의무는 국가가 돌봄 및 지원 부문을 규제하고 관여하는 방식을 형성해야 한다.

국가는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 보호,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상자 5 참조).

국가의 인권 **존중** 의무는 국가가 인권 향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삼가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는 국가가 기업을 포함한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의 인권 **이행** 의무는 국가가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상자 5:

이는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부문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CRPD는 국가가 협약에 명시된 인권을 존중, 보호, 이행하기 위해 정부 및 다양한 국가 기관이 취해야 할 실질적 조치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CRPD를 비준한 국가는 다음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다:

- 강압적인 돌봄을 강요하거나, 시설수용을 지속시키거나, 사람들의 주체성, 선택, 또는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이나 관행을 삼감으로써 협약상의 권리를 **존중**할 것.
- 공공 및 민간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설계되고 제공되는 방식에서 차별과 학대를 방지하며, 질적 기준을 보장함으로써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할 것.
- 비차별적이며 개인의 선호, 선택, 목표 및 필요를 우선시하고 이에 반응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돌봄 및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보장하는 다양한 범위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조직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보장함으로써 협약상의 권리를 **이행**할 것.[11]

다섯: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은 책임 있는 기업 행위,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에 관한 중요하고 권위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다.

UNGP 는 2011 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와 기업 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세 개의 축에 기반한다:

- **UNGP 축 I –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국제인권법상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그러한 침해를 예방, 조사, 처벌, 구제해야 함을 의미한다. 유엔 이행원칙상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기존 의무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반영한다.
- **UNGP 축 II –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 기업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이 관여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 **UNGP 축 III – 구제에 대한 접근**: 이 축은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법을 재확인한다. 이 축은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 및 제공과 관련하여 국가 기반 및 비국가 기반 행위자 양측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 행위자가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는 핵심 수단은 인권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돌봄 및 지원 부문과 관련된 인권 실사의 주요 구성요소, 그리고 구제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고려사항은 기초 보고서 제4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부문의 인권 실사와 구제"에서 논의된다.

여섯: 유엔 이행원칙은 영리 기업 행위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비영리 행위자에도 적용된다.

많은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들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 직원에 의존할 수 있다. 지역사회, 종교, 또는 자선 단체가 이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구조들은 여러 방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유엔 이행원칙은 어떠한 형태이든 이러한 민간 행위자에게 적용된다. UNGP에 명시된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은 "규모, 부문, 운영 맥락, 소유권 및 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12]

UNGP는 "기업"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제공하지 않지만, UNGP에 규정된 위험 관리 체계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유형의 주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든[13] 이 범주에 정확히 해당한다. 인권이 이들의 핵심 사명과 목표에 중심적이라는 점은 다양한 인권, 특히 CRPD에 명시된 인권을 이들의 운영에 있어 특히 "핵심적인" 것으로 만든다.[14]

비영리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선, 종교, 박애 단체는 흔히 여전히 전형적인 사업 활동에 관여한다. 이러한 활동은 채용 관행, 자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조달 과정 등을 통해 부정적 인권 영향에 관여될 가능성이 있다.[15]

이러한 이해는 국내법상 "기업"의 법적 구성과 일치한다. 이윤이 통상적인 동기이기는 하나, 일부 법적 정의는 활동이 항상 이윤을 창출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한다. 비영리 조직은 그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 또는 자선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UNGP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전 세계 많은 자선 단체는 이미 UNGP의 인권 실사 체계를 자신의 위험 관리 관행에 통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다른 국제 기구 및 관련 기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16]

일곱: 인권 존중은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도덕적 책무이자 비즈니스적 책무이다.

UNGP는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을 "어디서 운영하든 모든 기업에 대한 기대되는 행위의 전 세계적 기준"으로 설명한다.[17]

UNGP는 나아가 이 기준이 "국가가 자신의 인권 의무를 이행할 능력 및/또는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그러한 의무를 경감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8]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이행원칙[23]에서 설명되는데, 이는 기업 행위자가 상충하는 현지 요건에 직면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원칙을 준수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촉구한다.

이 시리즈의 기초 보고서들에서 다루어지듯, 서비스 제공자가 상충하는 요건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은 많다. 예를 들어, 이들은 CRPD의 권리 및 원칙과 잘 부합하지 않는 규제 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 방식을 뒷받침할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재정 지원 및 감독 모델 하에 있을 수 있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원칙을 "가능한 최대한 존중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책임이 있다.[20]

돌봄 및 지원이 인권 실현을 위한 구조적 조건이라는 사실(위 핵심 요지 셋 참조)21은 어려운 운영적·법적 맥락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 방식을 모색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더욱 시급성을 부여하며, 회복력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의를 갖는다. 이 시리즈의 다른 보고서들에서 논의되듯,[22]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인권의 실현자로서 갖는 중요성은 변혁적 행동을 위한 비즈니스적 논거와 도덕적 논거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책임 있는 기업 행위자들은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이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향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온다고 보고하며, 이는 그 자체로 서비스 이용자, 노동자,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를 위한 추가적인 긍정적 인권 성과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이점:

- 피해를 예방하고, 윤리적 성실성을 강화하며, 법적·평판적·컴플라이언스 위험에의 노출을 줄이는 더욱 강력한 권리 기반 위험 관리 체계;
- 투명성과 공유된 인권 공약에 기반한, 규제 기관 및 감독 기구와의 보다 건설적이고 책무성 있는 관계;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그 가족 및 대표자를 비롯한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개선된 관계;
- 공정한 조건, 참여, 노동자 권리 존중을 통한 인력의 안녕 및 인력 유지의 개선; 그리고
- 위기 및 변화하는 운영 맥락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더 큰 조직적 회복력과 적응력.

장애인을 위한 이점:

-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CRPD 상의 권리에 부합하게, 자율성, 존엄성, 선택을 강화하는 서비스;
- 안정적이고 잘 훈련된 노동자에 의해 제공되는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질의, 더욱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 서비스 설계 및 거버넌스에서의 더 강력한 참여와 발언권을 통한 신뢰와 신빙성, 이는 책무성과 이용자 주체성을 강화함.

사회 전체를 위한 이점:

- 사회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돌봄 및 지원 체계;
-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기관 및 제공자에 대한 더 큰 공공 신뢰;
- 돌봄 및 지원이 집단적 안녕에 필수적인 공유된 사회적 재화로 인정되는, 더욱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와 경제.

문의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 기초 보고서 시리즈의 모든 중점 분야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이행을 진전시킬 실무 도구, 사례 연구, 지침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있으신 경우를 포함하여, 저희의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HCHR 장애 및 인권 부서, **ohchr-disability@un.org**
OHCHR 기업과 인권 부서, **ohchr-bhr@un.org**

각주

1. A/HRC/58/43, 제5항
2. A/HRC/58/43, 제19항
3. 기초 보고서 제2호: 이용자 주체성과 돌봄 및 지원 서비스의 민주화 참조.
4. CRPD, 제4, 13, 16, 20, 21, 23, 24, 26, 27, 28, 30조; 그리고 A/HRC/RES/55/8
5. 목표 5: 성평등 – The Global Goals
6. A/HRC/58/43, 제5항; A/HRC/52/52, 제4항; 미래를 위한 협약 A/RES/79/1, 행동 8(d); ECOSOC, E/CN.5/2024/L.5, PP; 그리고 2025년 세계사회정상회의 정치선언 A/RES/80/5 등 참조.
7. 국제노동기구,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관한 결의. 2024년 6월 14일, 제112차 국제노동회의(제네바)에서 채택, 제9항 (강조 추가)
8. EQUIP 유형 분류(상자 4에 제시)는 제공자의 서로 다른 유형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것. 이와 대조적으로 ILO의 2024년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관한 결의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초점을 반영하여, 돌봄 경제를 서비스와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ILO 기준은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리 기반 접근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핵심적인 참고 기준이다. 이 시리즈의 다른 보고서에서 언급되듯,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은 돌봄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노동자 자신에게도 심각한 인권 관련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기초 보고서 제2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인권 위험 참조.
9. A/HRC/58/43, 제12항.
10. 기초 보고서 제3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인권 위험 참조.
11. 기초 보고서 제1호: 규제자이자 구매자로서의 국가 참조.
12. UNGP, 이행원칙 14.
13. 기초 보고서 제3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인권 위험 참조.
14. "핵심성" 개념에 관하여는 기초 보고서 제4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부문의 인권 실사와 구제 참조.

15.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관여" 문제에 관하여는 기초 보고서 제4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부문의 인권 실사와 구제 참조.
16.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UNGP와 밀접하게 부합하는, 기업의 인권 책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된 국내연락사무소(NCP)는 이러한 규정이 영리 기업뿐 아니라 비영리 다국적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해 왔다. ILO, 2014, 제10항 참조.
17.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원칙 11, 주석.
18. 상동.
19. 기초 보고서 제1호: 규제자이자 구매자로서의 국가 참조.
20.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원칙 23, 주석.
21. 이러한 관찰이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실사에 대해 갖는 함의는 기초 보고서 제4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부문의 인권 실사와 구제에서 더 자세히 논의된다.
23. 상동.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Palais des Nations
CH 1211 Geneva 10, Switzerland
Telephone: +41 (0) 22 917 92 20
Email: ohchr-infodesk@un.org
Website: www.ohchr.org